

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

[실증특례 사업비 지원]

경기도에서는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도내 신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창출을 위하여, 「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」 실증특례 승인기업부문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1. 공모개요

- (사 업 명)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
- (공모기간) 2021. 3. 2.(화) ~ 2021. 3. 22.(월)
- (지원기간) 협약일 ~ 2020. 10. 31.
- (지원대상) 본사나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(실증특례, 혁신금융) 승인을 받은 기업
- (지원규모) 5개사 내외
- (전담기관)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- (지원 제외대상)
 -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
 - 사업추진 도중 주소를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 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
 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
 - 이전 동일 과제로 경기도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

2. 지원내용 및 체계

○ 세부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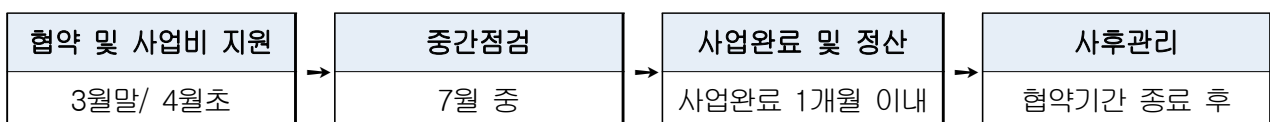
지원내용	세부내용	지원한도
① 실증비용 지원	○ 시제품 설계 및 제작지원 ○ 외부인건비 ○ H/W, S/W 구매, 설치, 렌트비 ○ 시험분석비용 지원(시험·검증 등 테스트) ○ 마케팅 비용 지원(실증사업비의 30% 이내) ○ 이행보증보험비용 ○ 기타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	실증비용의 50% (최대 1억원 이내) ※ 부가세 제외
② 책임보험료 지원	○ 실증특례 승인기업 대상 사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료 지원	보험료의 50% (최대 1천만원 이내)
③ 조기실증 컨설팅	○ 실증 시행에 따른 법·기술검토 ○ 실증사업 사후관리 대응을 위한 컨설팅 ○ 실증 사업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○ 기술 및 경영 애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○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비용	최대 500만원 이내 ※ 부가세 제외

※ 금융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또한 실증특례에 준하여 지원

○ 기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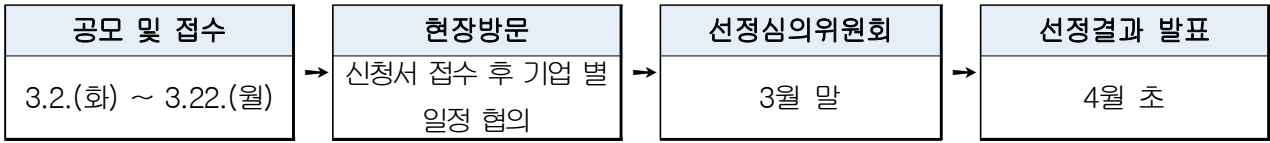
- 중앙부처에서 받은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지원 허용
- 세부 항목별 중앙부처에서 받은 지원금과 경기도 지원금 합계는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음
- 경기도 및 중앙부처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이외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능
- 지원규모는 기업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, 조정 후 기업별 지원금액은 최대 11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- 지원기간 내 규제샌드박스 사업수행을 위해 가입한 책임보험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가입한 건이라도 사후지원 가능

○ 지원체계



3. 선정절차 및 방법

○ (선정절차)



○ (선정방법)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발표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선정

※ 위원별 점수합계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(60점미만 지원 제외)

○ (선정기준) ※ 세부내용은 붙임(평가표) 참조

구분		배점	평가내용	
평가 항목	계	100		
	정량 지표	기술력	20	연구개발투자비율, 지식재산권 보유현황, 연구개발 인력현황
	정성 지표	혁신성	20	기업 및 사업의 혁신성 및 독창성
		지원필요성	10	규제특례 신청사유 및 기업의 지원 필요성
		제품·서비스의 활용도	10	제품 및 서비스의 예상 활용도
		실행가능성	10	기업체의 사업 수행능력
		사업비구성	10	사업비 구성의 적정성
		시장성	10	명확한 목표시장의 존재 및 목표시장의 적정성
		파급효과	10	사업의 공익성 및 사회·산업·경제 전반에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력

○ (선정결과) 평가 후 선정기업에 개별통지

4.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

○ (접수기간) 2021. 3. 2.(화) ~ 3. 22.(월)

※ 우편은 3. 22.(월) 도착분에 한함

○ (접수방법) Egbiz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제출(우편, 이메일, 방문 중 택 1)

○ (접수처) (우16229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07,
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SOS지원팀 박준식 대리
 (E-mail: sandbox@gbsa.or.kr)

○ (문의)
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(Tel: 031-259-6276)

○ (제출서류) ※ 붙임 표준서식 참조

붙임 표준서식	기타서류
① 지원 신청서 1부(서식 1)	⑦ 규제샌드박스(실증특례, 혁신금융) 신청서 1부(중앙부처 제출서류)
② 사업비 사용 계획서 1부(서식2)	⑧ 규제샌드박스(실증특례, 혁신금융) 승인 확인서 1부
③ 개인·기업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(서식3)	⑨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
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(서식4)	⑩ 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1부
⑤ 협약서 1부(서식5)	⑪ 최근 3개월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
⑥ 청렴이행각서 1부(서식6)	⑫ 기타 증빙서류

5. 기타사항

- 선정된 기업은 사업비 지원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함
-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
-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 취소되며,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
-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

붙임 1. 평가표 1부.

2. 신청서 및 제출서식 1부. 끝.

[참고] 평가표 서식

1. 정량평가표

1. 정량평가(20점)		평가지표	배점
기술개발투자율 (7점)*	(당기연구개발비/당기매출액 × 100)	4% 이상 : 7점 4% 미만 ~ 2.9% : 6점 2.9% 미만 ~ 1.2% : 4점 1.2% 미만 ~ 0.2% : 2점 0.2% 미만 : 1점	
지식재산권 보유현황 (7점)	특허 등록 : 건당 4점 특허 출원 : 건당 3점 실용신안 등록 : 건당 3점 실용신안 출원 : 건당 2점		
연구개발인력 (6점)**	(연구개발인력 / 총 종업원 수)	10% 이상 : 6점 10% 미만 ~ 6% : 5점 6% 미만 ~ 3% : 4점 3% 미만 ~ 1% : 3점 1% 미만 : 2점	

* 만 1년 미만,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4점으로 평가함

**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은 계획서 상 실증참여인력을 연구개발인력으로 인정함

2. 정성평가표

2. 정성평가(80점)		평가지표	배점
혁신성 (15)	기업 및 사업의 혁신성 및 독창성	매우우수 : 15점 우수 : 13점 약간우수 : 11점 보통 : 9점 약간미흡 : 7점 미흡 : 5점 매우미흡 : 3점	
지원필요성 (15)	규제특례 신청사유 및 기업의 지원필요성	매우우수 : 15점 우수 : 13점 약간우수 : 11점 보통 : 9점 약간미흡 : 7점 미흡 : 5점 매우미흡 : 3점	
제품·서비스의 활용도 (10)	제품 서비스의 예상 활용도	매우우수 : 10점 우수 : 8점 보통 : 6점 미흡 : 4점 매우미흡 : 2점	
실행가능성 (10)	기업체의 사업 수행능력	매우우수 : 10점 우수 : 8점 보통 : 6점 미흡 : 4점 매우미흡 : 2점	
사업비구성 (10)	사업비 구성의 적정성	매우우수 : 10점 우수 : 8점 보통 : 6점 미흡 : 4점 매우미흡 : 2점	
시장성 (10)	명확한 목표시장의 존재 및 목표시장 의 적정성	매우우수 : 10점 우수 : 8점 보통 : 6점 미흡 : 4점 매우미흡 : 2점	
파급효과 (10)	사업의 공익성 및 사회, 산업, 경제 전 반에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력	매우우수 : 10점 우수 : 8점 보통 : 6점 미흡 : 4점 매우미흡 : 2점	